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74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 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 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, 종전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 시원의 자격,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 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(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6조의 제목 "(위생용품위생감시원)"을 "(위생용품감시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"위생용품위생감시원"을 각각 "위생용품감시원"으로 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(이하 "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"이라 한다)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표시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

-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- 2. 위생용품의 성분·용도·효과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표시·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- 3.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감시원이 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지원 업무
- 4. 그 밖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해촉(解囑)하여야 한다.
- 1.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
- 2.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
- 3.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, 직무 범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영업신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 거(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)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제3조(위생용품위생감시원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각각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용품감시원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5조(영업신고의 제한) 다음 각 제5조(영업신고의 제한) 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신고를 할 수 없다. <단서 ----. 다만, 영 신설> 업시설 전부를 철거(행정 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 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) 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 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·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위생용품위생감시원) 제14 제26조(위생용품감시원) -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와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, 특별시·광역시· 특별자치시 • 도 • 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구에 위생용품위 위생용품감 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시원---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, 임 위생용품감시원-----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7조(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 | 제27조(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) ① 원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ㆍ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

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비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, 직 | 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「식품위생법」 제33조를 준용 한다.

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 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「소비 자기본법 _ 제29조에 따라 등록 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 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나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위생 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 위생용품감시원(이하 "소비자 위생용품감시원"이라 한다)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표시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관 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 에 관한 자료 제공
- 2. 위생용품의 성분·용도·효 과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· 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- 3.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감시 원이 하는 위생용품에 대한

수거 지원 업무

- 4. 그 밖에 위생용품 안전관리

 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

 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제 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해촉(解囑)하여야 한다.
- 1.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 하거나 해임된 경우
- 2.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
- 3.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의 자격, 직무 범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